

2007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8년도 전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1.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 3

2. 2007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 9

9	가. 총괄
12	나. 국별 동향

3. 2008년 국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 35

35	가. 총괄
36	나. 국별 동향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 59

요 약

1. 전 세계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

- WTO 체제 출범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총 42개국이 3,097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01년 이후 조사개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2007년 상반기 조사개시 건수(49건)는 전년 동기대비 38건이 감소했고, 확정조치(57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4건이 감소함.
- 인도 등 개도국의 반덤핑 제소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551건)이 반덤핑조사 최대 피소국임.

□ 세이프가드

- 2002년 34건(조사건수)을 정점으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철회로 대폭 감소추세를 보였음. 2006년은 터키의 발동조치 증가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7년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섬.
- 1위 발동국 인도를 비롯해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주로 활용

□ 반보조금/상계관세

- 199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조사개시건수는 193건, 발동조치는 117건이며, 올 상반기 조사건수는 2건임.
- 우리나라 상계관세는 주로 미, EU, 캐나다로부터 부과
-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NME)에 상계관세 조사 증가 전망

2. 2007년도 對韓 수입규제 동향

- 규제건수 : 2007년 19개국으로부터 총 107건(조사 중 포함)
 - 133건('03) → 130건('04) → 120건('05) → 110건('06) → 107건('07)
- 규제형태별 : 반덤핑 96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4건, 상계관세 3건
- 품목별 : 석유화학제품 44건, 철강제품 24건, 섬유류 18건, 전기·전자 6건, 기타 15건
- 국별 : 인도 22건, 중국 21건, 미국 17건, 호주·터키 6건, 남아공·EU 5건 등

□ 신규 피소건 : 총 11건

- 품목별 : 화학 7건, 철강 1건, 기타 3건
- 피소형태 :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1건
- 국별 : 선진국 3건, 개도국 8건(73%), 인도가 5건 제소
- 2007년 중 규제 종료건수 : 14건

3. 2008년도 對韓 수입규제 전망

□ 수입규제조치 증가율 둔화 전망

- WTO 정착, FTA 체결확대로 수입규제조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도 낮음.
- 그러나 일부국가에서 특정 수입급증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 상존함.
-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동반규제 가능성 주의

□ 미국

- 민주당 의회 장악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 수입규제는 대중무역적자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소가 주를 이룰 전망

□ 중국

- 향후 통상정책이 수입확대-수출급증세 조절에 역점을 둘 예정이나 對한국 무역수지적자, 내수시장 공급과잉 등으로 수입규제 가능성 상존
- 2003년 이후 화공제품에 반덤핑조사가 집중됐고 2008년에도 규제 우려
- 철강은 중국 내 생산과다로 중저가품의 수출시 특히 주의 요망

□ EU*

- 무역에 노동과 환경 연계한 통상장벽 강화로 신보호주의적 정책 추진
- 안전과 환경을 이유로 대중 수입규제 조치 확대 전망
- 수입철강에 대한 유럽철강업계의 연이은 반덤핑 제소가 이뤄져 수출이 급증한 철강제품에 대한 주의 요망

□ 기타

- 남아공은 섬유·철강제품, 인도는 석유화학제품, 터키·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는 의류섬유제품, 이집트는 자동차부품과 화학제품에 수입규제 가능성 높음.

* EU(European Union)는 법률적인 이유로 WTO에서 EC(European Communities)로 호칭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용어를 EU로 통일하여 사용함.

1. 전 세계 수입규제 현황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3,449건이며, 발동조치건수는 2,196건임.

<WTO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총 계
조사개시	3,097	159	193	3,449
발동조치	1,997	82	117	2,196

자료 :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 반덤핑 '95.1.1~'07.6.30, 세이프가드 '95.1.1~'07.10.31, 상계관세 '95.1.1~'07.6.3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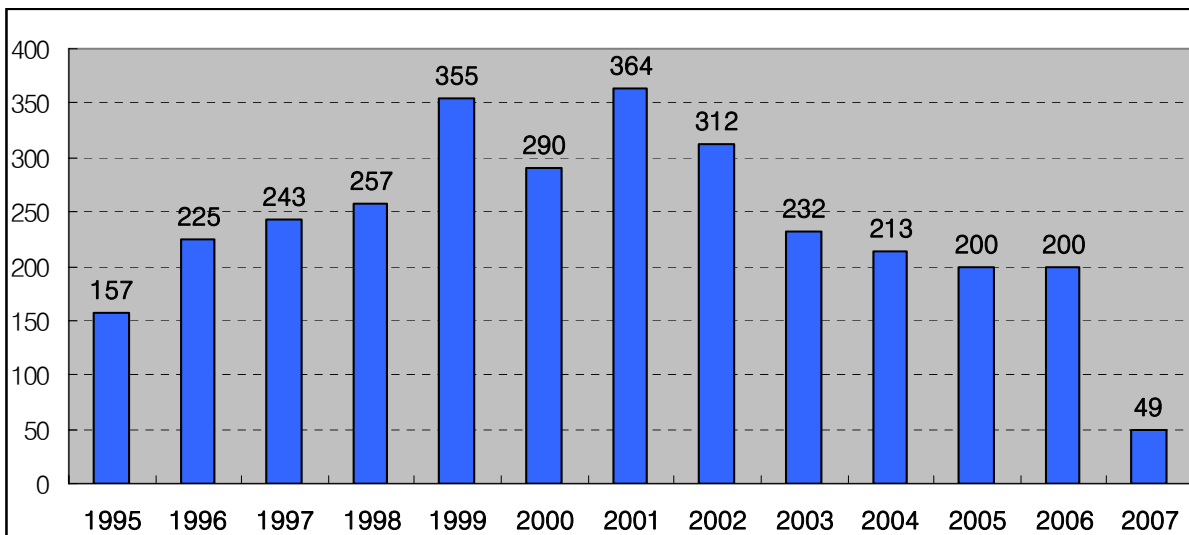
[반덤핑]

- 반덤핑 조사개시 감소추세

- 199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12년 반 동안 전체 42개국¹⁾이 총 3,097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는데, 2001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추이>

(단위 : 건)



자료 :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 2007년은 6월까지 집계

1) EU는 1개국으로 간주하나, 슬로베니아·폴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은 EU 가입이전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것을 감안하여 개별국가로 집계함. 2005년에 비해 요르단¹⁾이 2006년 반덤핑 조사 개시로 1개국 추가됨.

- 2007년 상반기 반덤핑 조사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동기 87건에 비해 38건이나 감소했음. 반면, 반덤핑 확정조치는 57건이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 동기 71건 조치에 비해 14건 감소함.
-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국가 수는 2007년 6월 현재 13개국으로, 2001년 27개국을 정점으로 2003년 24개국, 2005년 19개국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 24개국으로 증가

□ 인도 등 개도국 반덤핑 제소 활발

<주요 국가의 반덤핑조사 개시현황>

순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6		2002~'07.6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인도	81	인도	46	EU	30	인도	28	EU	35	인도	13	인도	223
2	미국	35	미국	37	중국	27	EU	25	인도	34	뉴질랜드	6	미국	119
3	중국	30	중국	22	미국	26	중국	24	아르헨	15	한국	5	중국	118
4	태국	21	한국	18	터키	25	남아공	23	브라질	12	브라질	4	EU	117
5	EU	20	캐나다	15	인도	21	파키스탄	13	중국	11			중국	4
6	터키	18	멕시코	14	아르헨	12	미국	12	호주	10	일본	3	아르헨	57
7	호주	16	인니	12	캐나다	11			터키	8			아르헨	8
8	아르헨	14	터키	11	호주	9	아르헨	이집트	터키		8	남아공	3	남아공
9	페루	13	호주	8	브라질	8	이집트			7				7
10	멕시코	10			남아공	페루	7	호주	멕시코		7	캐나다	7	

자료 :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2002~07년 6월 중 최다 반덤핑 조사개시국은 인도로 총 223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도 인도가 최다 조사국으로 전년 동기 20건보다 감소한 13건을 기록함.
- 2002~07년 .6월 사이 10대 발동국 중심,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별로 살펴보면, 뉴질랜드, 한국, 브라질,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는 전년 동기보다 반덤핑조사 개시건수가 증가했으나, 인도와 멕시코는 감소했음. 또한 호주, 대만, EU, 캐나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상반기 중 반덤핑조사 개시가 1건도 없었음.

- 반덤핑 조사개시 87건 중 31건이 선진국, 56건(64%)이 개도국, 규제조치 71건 중 9건이 선진국, 62건(87%)이 개도국에 의한 것임. 인도 등 개도국들이 반덤핑 조사 및 규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한국, 반덤핑 피소건수 지속 감소

<주요 국가의 반덤핑조사 피소현황>

순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6		2002~07.6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중국	51	중국	52	중국	49	중국	56	중국	68	중국	16	중국	291
2	한국	23	미국	21	한국	24	인니	14	대만	14	대만	4	한국	92
3	러시아	18	한국	17	대만	21			말련	12			한국	81
4	대만	16	일본	16	미국	14	인도	13	일본	11	일본	2	미국	72
5	인도		인도	14	태국	9			태국				12	미국
6	일본	13	대만	13			브라질	8	한국	8	인니	인도		2
7	인니	12	EU	10	일본	미국	7						브라질	
8	태국		인니	8	인도			8	미국	7	태국	7	말련	EU
9	미국	말련	7		인니	8	일본		7		싱가폴			
10	EU	10		태국	7		러시아	EU		5	인도	6	1	러시아

자료 :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임.
- 1995년 이후 전체 3,097건 중 551건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된 조사이며, 올 상반기도 중국이 총 49건 중 16건(33%)으로 최다 피소국임.
- 2007년 상반기 최다 반덤핑 조치 발동국은 인도로, 상반기에만 16건의 조치를 발동함.
- 우리나라의 피소건수는 2003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2004년에 잠시 증가(24건)했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4건만 피소됨.

□ 반덤핑 조사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 철강/금속, 의류/직물 등이 주된 타깃임.

<주요 품목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6
화학	94(40.5%)	93(43.4%)	74(36.8%)	63(36.8%)	30(12.9%)
철강/금속	52(22.4%)	36(17.0%)	38(18.9%)	34(18.9%)	3(1.3%)
의류/직물	14(6.0%)	21(9.9%)	27(13.4%)	12(13.4%)	1(0.4%)
전기/전자	14(6.0%)	14(6.6%)	18(9.0%)	28(9.0%)	1(0.4%)
제지류	20(8.6%)	8(3.8%)	6(3.0%)	17(3.0%)	9(3.9%)

자료 :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 ()는 점유율

- 2007년 상반기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30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반덤핑 발동조치 또한 총 57건 중 16건이 화학제품에 해당함.
- 의류/직물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로 해제되는 섬유쿼터에 대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했으나 2006년부터 감소해 2007년 상반기는 1건만 기록

[세이프가드]

- 1995년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총 159건이며, 이중 82건의 발동조치가 이뤄짐.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건수가 2002년 34건을 정점으로 매우 높았던 수준에서 2006년 잠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조사개시	2	5	3	10	15	25	12	34	15	14	7	13	4	159
SG발동	-	1	3	5	5	7	9	14	15	6	6	7	4	82

자료 : The Committee on Safeguards, WTO

주 : '07년 자료는 '07.10.31. 기준

- 2001년, 2002년에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해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했으나 2003년 이후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철회로 감소추세가 이어짐.
- 세이프가드조치는 EU 등 전통적 반덤핑조치 활용국이 아닌, 개도국에서 주로 자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임.

<세이프가드 주요 발동국 현황>

(단위 : 건)

구분	인도	칠레	요르단	미국	터키	체코	에콰도르	한국	기타	계
조사개시	15	11	12	10	11	9	7	4	80	159
SG발동	9	7	6	6	7	5	3	2	37	82

자료 :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 조사개시 및 발동건수 '95~'07.10.31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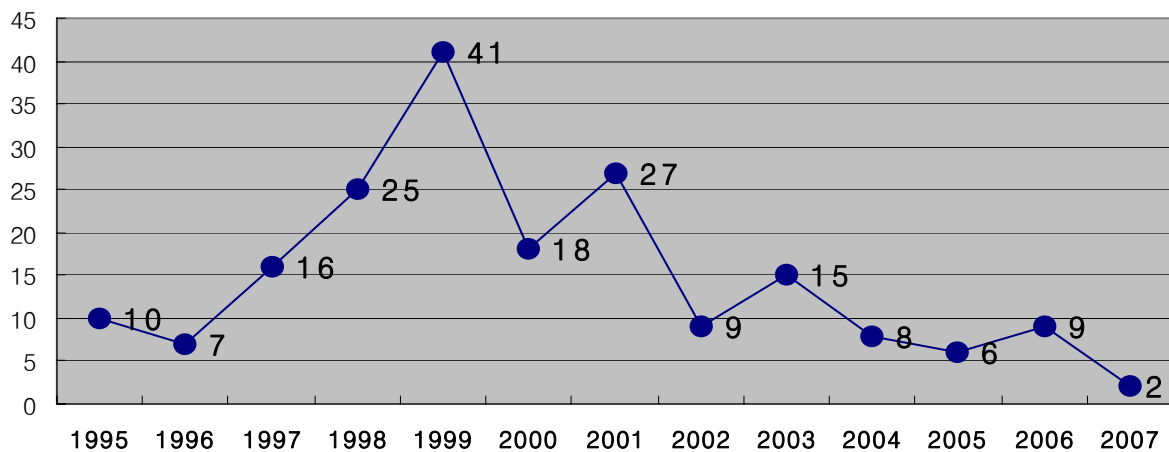
- 1995년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이 개시했으며, 규제조치도 82건 중 9건을 발동했음. 뒤를 이어 요르단이 12건을 기록함.
- 2007년 10월 31일 현재 4개국에서 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됐는데, 호주, 요르단,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가 각 1건을 발동함.
- 터키는 2004년 5건, 2006년 5건, 2007년 1건으로 최근 활발히 세이프가드 조사를 활용했는데 이는 터키의 금융위기와 큰 폭의 무역적자 만회를 위한 자국산업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급증한 것임.
- 분야별로 보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화학제품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도 뒤를 이어 21건으로 조사개시가 이뤄짐.

[반보조금/상계관세]

-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193건이고 ('06 : 9건, '07 : 2건), 117건이 발동 조치됐음.

<연도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단위 : 건)



자료 :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2007.6.30. 기준

- 2003년 이후 신규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 9건으로 다시 증가함.

□ 우리나라, EU와 美에 집중 피소

- 조사건수는 미국이 75건으로 1위, EU 46건, 캐나다가 20건을 나타냈고, 발동건수는 미국이 47건, EU 23건, 캐나다 11건으로 선진국이 1, 2, 3위를 차지함.
- 최대 피소국은 인도로 44건 조사를 받았으며, 26건의 상계관세가 부과됐음.
-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16건의 상계관세가 조사됐으며, 8건이 부과 조치됨. 16건의 조사개시는 EU가 7건, 미국 6건, 일본과 남아공이 각 1건씩 부과했으며, 8건의 발동조치는 EU 2건, 미국 5건, 일본 1건임.

□ 상계관세 조치 발동건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나, 반보조금 조사는 수출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님.
- 각국 정부도 자국산업을 지원할 때 특정성이 없는 형태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책을 개발, 상계관세조치 부과가 사실상 어려움.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등 비시장 경제국가 지위(NME ; Non-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받은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조사 개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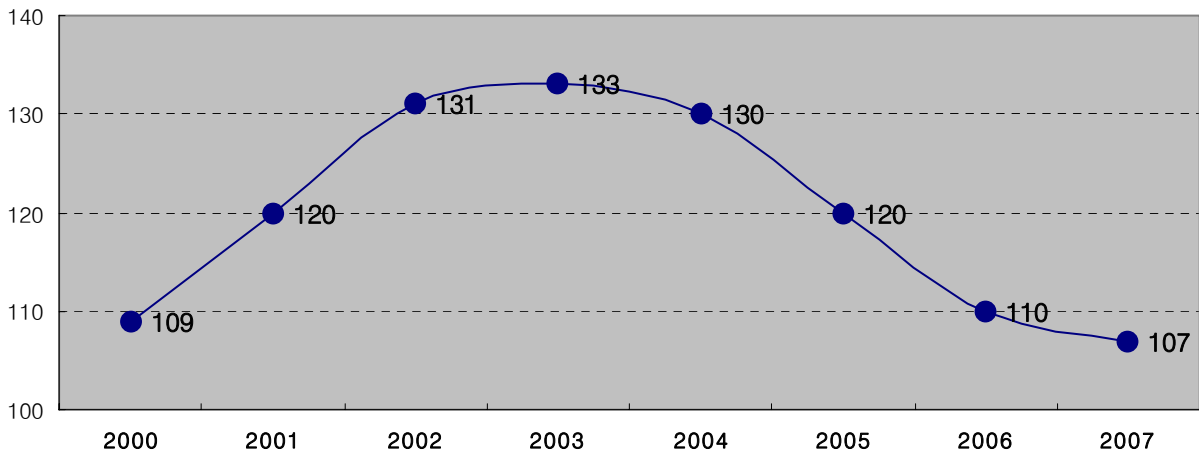
- 캐나다, EU 등은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7년 3월 중국산 도공상실지 관련 처음으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음.

2. 2007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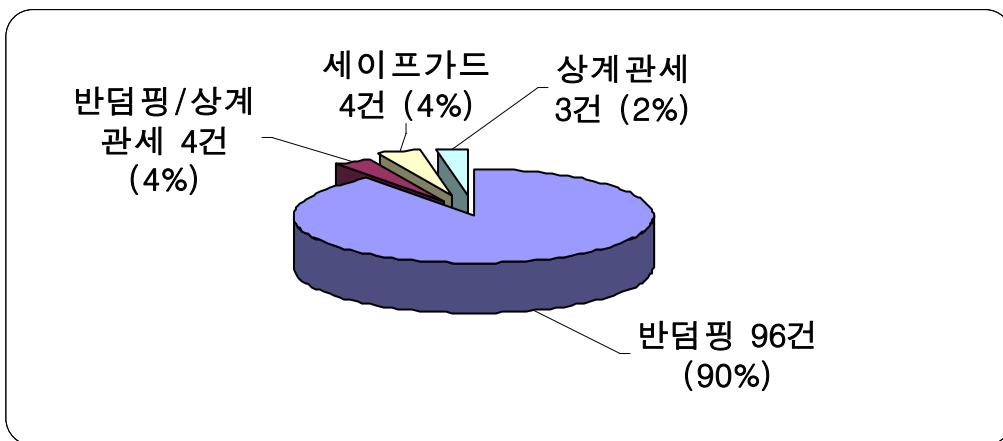
- 2007년 12월 현재 중국, 인도 등 19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이 총 107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 107건의 수입규제 중 조사 중인 것(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 중으로 집계)은 11건임.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건수 추이>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6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4건, 세이프가드 4건, 상계관세가 3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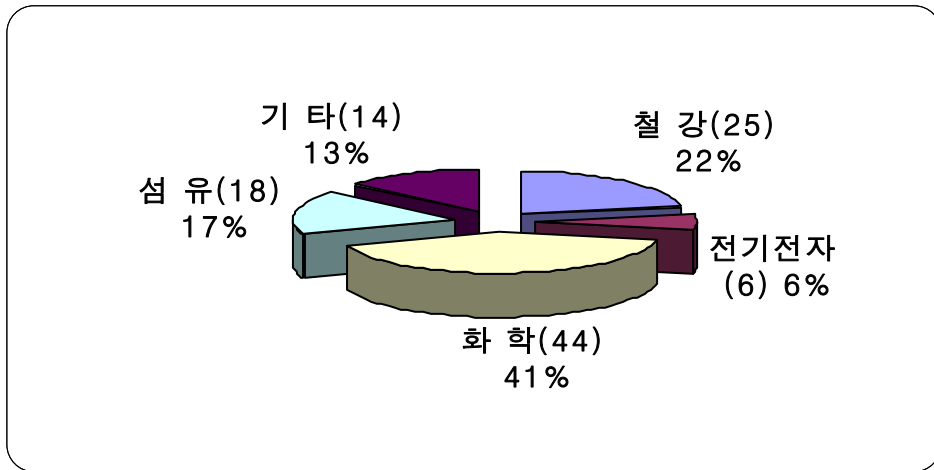
<규제형태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이 24건, 섬유류 18건, 전기·전자 6건, 기타 15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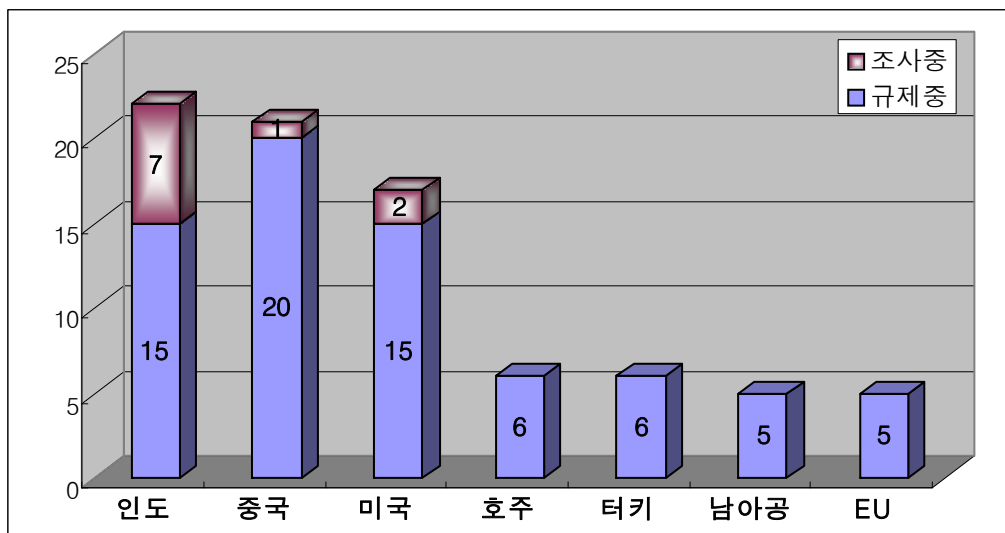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과 인도, 철강제품은 미국과 캐나다, 섬유류는 터키와 인도, 전기·전자는 EU 주로 규제를 하고 있음.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로는 인도 22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21건, 미국 17건, 호주/터키 6건 순서임.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2007년 신규 수입규제 피소 건수는 11건임.

<2007년도 신규 피소 현황>

연번	조사개시	피 소 품 목	제소국가	유형
1	1.11	페놀	인도	반덤핑
2	2.12	아세톤	인도	반덤핑
3	3.9	아세톤	중국	반덤핑
4	11.2	PVC 문/창문	우크라이나	반덤핑
5	4.26	글리신	미국	반덤핑
6	4.5	라이신	남아공	세이프가드
7	7.6	고무화학제품	인도	반덤핑
8	7.18	연벽사각 파이프	미국	반덤핑
9	7.20	과산화수소	인도	반덤핑
10	9.12	CD-R	인도	반덤핑
11	11.2	경량감열지	미국	반덤핑

○ 품목별로는 화학 7건, 철강 1건, 기타 3건, 피소형태는 반덤핑 9건,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상계관세 1건임.

○ 2007년 신규 수입규제를 제소한 국가는 5개국이며, 인도가 5건을 제소함.

<연도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해당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신규 피소건수	32	27	24	17	28	15	11	11
선진국	12	8	8	5	10	3	4	3
개도국	20	19	16	12	18	12	7	8

○ 개도국에 의한 신규 피소건수 비중이 선진국에 의한 신규 피소건수 비중보다 높음. 2007년에는 최근 가장 높은 73%를 기록함.

□ 2007년 종료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4건임.

<2007년 종료 수입규제조치>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유형
1	뉴질랜드	오일필터	'06.12	반덤핑
2	말레이시아	골심지	4.24(조사중지)	반덤핑
3	멕시코	폴리에스테르장섬유 텍스춰드사	7.5	반덤핑
4	미국	유정용 강관	6.18	반덤핑

5	미국	철근	7.26	반덤핑
6	미국	도공상실지	11.20(조사종료)	반덤핑
7	미국	경량 감열지	11.16(조사종료)	반덤핑
8	인도	에틸렌고무(EPDM)	-	반덤핑
9	인도	PIB (Poly Iso-Butylen)	-	반덤핑
10	중국	옥탄올	1.31(조사중지)	반덤핑
11	호주	폴리올(PPG)	4.27	반덤핑
12	호주	열연형강(HSS)	7.5	반덤핑
13	호주	발포성 폴리스티렌(EPS)	11.5	반덤핑
14	EU	컬러TV	8.30	반덤핑

나. 국별 수입규제 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7년 말 현재 남아공은 5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2), 화학(2), 제지(1) 등이며,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4건, 세이프가드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스테인리스 용접관	7306.40	반덤핑	'98.7.31	'99.6.18	반덤핑관세율 : 47.6% '04.7.16. 관세부과 연장 대상업체 : LG금속(무협의), 스미켄부산
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반덤핑	'00.10	'02.8.28	반덤핑관세율 : 10.4% '07.8.28 종료 예정 KIS WIRE(무협의), DSR제강 '07.8.17 일몰재심 개시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3907.60	반덤핑	'05.4.8	'06.2.19	반덤핑 관세율 : 19.7% SK케미컬, 고합, 휴비스 5년간 관세부과
백상지	4810.92	반덤핑	'05.8.5	'06.12	'06.2.24 잠정관세율 38.0% '06.12월 최종판결 - 관세율 23.0% 대상업체 : 한솔제지, 대한펄프 한솔제지 2.4%, 기타업체 23%
라이신	2309.90.65 2922.41	세이프 가드	'07.5	'07.12	대상업체 : 라이신 제품 생산·수출업체 일부 개도국 제외 관세부과 종료(11.28)

주 : 2007년 12월 11일 기준

자료 :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남아공 관세청(SARS)

□ 라이신(Lysine) 제품 세이프가드 발동(2007.12.14)

- 남아공 정부는 2007. 5. 11일자로 라이신 제품(HS코드 2309.90.65, 2922.41)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12. 14일 최종 판정결과 발표
- 잠정판정 결과
 - 잠정조치 적용 기한 : 2007. 5. 11 ~ 2007. 11. 27 (200일)
 - 대상국가 : 라이신 제품 생산/수출국(166개 개도국은 적용 제외)
 - 부과 관세율 : 160%(중가세) - 2007. 9. 13일부로 관세율 인하 : 160% → 27%
- 최종판정 결과
 - 적용기간 : 2007. 5. 11 ~ 2010. 4. 10 (35개월)
 - 대상국가 : 라이신 제품 생산/수출국(166개 개도국은 적용 제외)
 - 부과 관세율 : 기간별 차등 적용 → 점진적 관세인하²⁾
- 우리나라도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생산량은 전무
 - 국내에서 라이신 제품은 한국 바스프社만이 생산하여 왔는데, 2006년 이후에는 거의 생산을 중단하여 현재 국내 생산량은 전무함.
- 그러나 국내업체가 라이신 생산시설을 인수하여 2008년 가동할 예정으로 남아공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국내 라이신 사업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연선, 로프, 케이블 일몰재심(Sunset Review) 개시

- 2002년 9월부터 연선, 로프, 케이블(HS 7312.10)에 부과되어 오고 있는 반덤핑 관세(10.4%)가 2007년 8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8월 17일 일몰재심 개시
- ITAC(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은 2008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일몰재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과거 사례로 미루어 보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일몰재심 대상기간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이나 반덤핑 관세 만료 이후의 산업피해 전망도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남아공 세이프가드 규정 제21조 8항에 따라,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부과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음.

[뉴질랜드]

□ 수입규제 현황

- 뉴질랜드는 2005년 1월 한국산을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자동차 오일필터(HS 8421.23.0000)에 대한 최종 덤핑 관정을 내려 12%에서 최고 155%까지의 관세를 부과함.
- 2006년 12월 말 주재국의 오일필터 제조 공장이 모두 폐쇄됨에 따라 종전 2010년 1월까지 부과될 예정이던 덤핑 관세가 철회됨.
- 따라서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규제는 없음.

[대 만]

□ 2007년 12월 현재 1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 2007년 12월 현재, 한국산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음.

- 현재 대만정부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8년 3월경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수입규제의 신규 제소 및 조치 등 변동내역은 없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관정	비고
시멘트 (Portland Cement)	2523.2990 2523.1090	반덤핑	'01.7.25	'02.7.19	반덤핑관세율 : 쌍용 117.40%, 동양 126.81%, 라파즈한라 110.99%, 기타 119.92%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검토 중

자료 : 대만 재정부 關政司

[러시아]

- 2007년 12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1건의 세이프가드규제를 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파이프 (Big-diameter Pipes)	7304.109002/109009/319900/399900/599900, 7305.110001/110002/110003/110009/120001/120009, 7305.19/31/ 39/90	세이프가드	'05.2.1	'06.7.27	3년간 8% 관세 부과 2006년 12월 말부터 발효

자료 : 러시아 경제통상발전부

- 2007년 수입규제의 신규 제소 및 조치 등 변동내역은 없음.

[말레이시아]

- 2007년 말 말레이시아는 총 3건의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2건, 기타 1건임.

- 골심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 MPMA(Malaysia Pulp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제소로 2006년 7월 27일 조사가 개시된 골심지(Corrugating Medium Paper/HS 4805.11)에 대해 2006년 12월 24일 한국산을 포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이 있었으나 최종 판정기한인 2007년 4월 24일까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취소됨.
-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를 담당하는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소속 Trade Practices Division을 통해 동 건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MITI 홈페이지에도 골심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내용이 삭제됨.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인쇄용지	4801.00	반덤핑	'03.1.16	예비판정 : '03.05.29 최종판정 : '03.09.26	관세율 43.24%
무수말레산	2917.14	반덤핑	'04.6.10	예비판정 : '04.10.07 최종판정 : '05.02.04	관세율 26.34%
PET	3907.60	반덤핑	'05.1.27	예비판정 : '05.06.25 최종판정 : '05.10.23	관세율 17.09%

주 : 2007년 11월 30일 기준

[멕시코]

- 2007년 12월 현재 섬유제품에 대한 1건의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5503.2001/ 2002/2003/ 2099	반덤핑	'92.3.19	'93.8.19	반덤핑관세율 : 삼양사 제조·수출시 3.74% 삼양사 제조·대우 수출시 14.81% 제일합섬 제조·삼성 수출시 4.49% 기타 32% '04.12.10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05.7.12 로우멜티드 규제 해제

- 2007년 7월 5일부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텍스춰드사에 적용되었던 반덤핑 관세 폐지 (HS 54023301)

○ 변동내용

- 2001년 6월 22일부터 한국산 및 대만산 해당제품에 반덤핑관세 16.03%가 적용되었으나, 2007년 7월 5일을 기해 일반관세인 9% 적용

○ 해제경과

- 동 반덤핑관세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21일까지였으나, 멕시코 내 동 제품 생산기업이 경제부에 적용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함. 이후 경제부 조사결과 한국, 대만산 제품 가격이 덤핑가격이 아님을 판정하고 반덤핑관세 적용을 폐지함.

- 2007년 중 신규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 없음.

[미 국]

□ 2007년 말 현재 수입규제 건수는 17건(조사 중 2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11건, 화학 3건, 전기전자 및 섬유 각 1건, 기타 1건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2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상계관세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7219.13/14/ 31/32/33/34/ 35/90, 7220.12 /20/90	반덤핑/ 상계관세	'98.6.30	반덤핑 : '99.7.27 상계관세 : '99.8.6	'05.7.25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 반덤핑 : 포스코 2.49%, 대한금속 58.79%, 대양 5.44% 기타 2.49% - 상계관세 : INI/BNG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07.9.10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 대양금속 0.03%
철강관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7209, 7210, 7211, 7212, 7215, 7217(일부)	반덤핑/ 상계관세	'92.7.20	상계관세 : '93.8.17 반덤핑 : '93.8.19	'05.11. 2차 일몰재심 개시 '06.9.11 연례재심 예비판정 - 반덤핑 : 동부 1.97%, 포스코 0.48%, 유니온 1.69%, 하이스코 0.03% '07.9.10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 동부 4.96%, 현대 하이스코 0.51%, 유니온 4.35% - 상계관세 : 동부 0.39%, 포스코 0.07% '07.9.10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 포스코 0.10%, 동부 0.27% 연례재심 최종판정 08.3.10으로 연기
철강후판	7208.40/51/ 52/53/90, 7210.70/90, 7211.13/14/ 90, 7212.40/ 50, 7225.40/ 50/99,7226.91	반덤핑/ 상계관세	'99.3.16	'00.2.10	'05.12.6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 반덤핑: 동국철강 2.98%, 기타 2.98% - 상계관세: 동국철강 2.36%, 기타 2.36%, 포스코는 미소마진(0.82%)으로 제외 '07.7.13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동국제강 미소마진(0.10%) 판정
금속제 주방용품	7323.93 9604.00	반덤핑/ 상계관세	'86.1.31	'87.1.20	'05.9.27 2차 일몰 재심 결과 -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판정 범구 31.23%, 대성 6.11%, 해동 12.14%, 경동 8.36%, 남일금속 0.75%, 기타 8.1% - 상계관세율 0.77%

스테인리스 열연 후판코일	7219.1100/ 1200	반덤핑	'98.4.27	'99.5.21	'05.7.18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포스코(6.08%), 기타(6.08%)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PSF)	5503.2	반덤핑	'99.4.30	'00.5.25	'06.4.3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모든 한국기업 7.9% '07.6.6 연례재심 예비판정 휴비스 2.51%, 동우는 수출실적이 없어 제외
스테인리스 봉강	7222.1100/ 2000/3000	반덤핑	'01.2.1	'02.3.7	창원특수강 13.38%, 동방 4.75%, 기타 11.30% - ITC는 6.14일자로 일몰재심 조사 개시
스테인리스 선재	722100.05, 15, 30, 45, 75	반덤핑	'97.8.26	'98.9.15	'04.8.13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포스코, 창원, 동방 1.67% * '07.8.16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 창원특수강(現 포스코특수강), 동방산업 및 계열사에 모두 28.44%
스테인리스강 관 이음쇠	7307.23	반덤핑	'92.6.15	'93.2.23	'05.10.20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아세아벤드 21.2%, 기타 21.2%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7306.40	반덤핑	'91.11.1	'92.12.30	'06.9.11 2차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세아제강 2.67%, 삼미금속 7.92%, 기타 7%
스탠다드 강관	7306.30	반덤핑	'91.10.4	'92.11.2	'06.8.8 일몰재심 지속 판정 현대강관 6.86%, 한국종합철관 6.21%, 마산철강 11.63%, 세아제강 4.91%,기타 6.37%
PET필름	3920.62/63/ 69	반덤핑	'90.4.27	'91.4.15	'05.10.20 2차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SKC Ltd. SKC America 13.92%, 기타 21.50% '07.10.2 상황변동재심 예비판정 결과 코오롱 6.0%(코오롱 제품에 대해서는 '96.11.14일부로 반덤핑 관세가 철회되었음.)
PC강선	7312.10.1099	반덤핑	'03.2.27	'04.1.28	고려제강·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DRAM	8542.21.2021	상계관세	'02.11.27	'03.8.11	'05.9.28 재심개시 '06.11.15 가중평균마진 2.7% '06.11.16 연례재심의 조사기한 연장('07.2.7) '07.9.10 연례재심 예비판정결과 하이닉스 반도체 23.32% '08.3.10 최종판정 예정

폴리염화비닐 (PVA)	3905.30	반덤핑	'02.9.26	'03.10.1	동양제철화학 38.74%, 기타 32.08%
글리신 (Glycine)	2922.49.4020	반덤핑 조사중	'07.4.26		'07.9.13 예비판정 결과 : 한국바이오젠(주) 138.83%, 기타 138.60%
연벽사각 파이프	7306.61.50.00/ 7306.61.70.60	반덤핑 조사중	'07.7.18		'08.2.19 최종덤핑판정 , '08.4.4 최종산업피해판정 예정

주 :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일몰재심 결과 한국산 유정용 강관(6.18), 철근(7.26)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폐
- 한국산 제지(도공상실지, 경량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무혐의로 종결
 - 미 무역위원회는 2006년 11월 27일 조사가 개시되었던 한국산,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11월 20일 최종으로 산업 무피해 판정
 - 미 상무부는 10월 18일 한국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0.47~31.55%의 덤핑 마진과 0.00~1.46%의 상계관세 마진 판정을 내렸으나, 금번 무역위원회의 산업 무피해 판정을 통해 조사가 종료
 - 경량 감열지는 올해 11월 2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미 무역위원회는 한국산의 수입량이 미미함을 근거로 11월 16일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
- 한국산 글리신, 연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GEO Specialty Chemicals社의 제소에 따라, 한국산을 비롯한 인도, 일본산 글리신(HS2922.49.4020)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4월 26일에 개시되어, 9월 13일 상무부의 예비판정 시 한국 바이오젠 138.83%, 기타 기업엔 138.60% 반덤핑관세율 부과
 - * 글리신은 스위트너/조미료, 완충제 등으로 널리 사용
 - Allied Tube & Conduit 등 13개社의 제소에 따라 한국산 및 중국산, 멕시코산, 터키산 연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7월 18일에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임.
 - * 중국산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도 병행

[우크라이나]

PVC 문·창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07년 11월 2일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대상국에 무관하게 덤핑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VC 문·창문	3916.20.10.90	반덤핑 (조사 중)	'07. 11. 2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아르헨티나]

2007년 12월 현재 3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섬유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냉연강판	7209.15/16/17/18/25 /26/27/28/90, 7211.23. 7225.50, 7226.92	반덤핑	'01.7.19	'03.1.10	관세율 60.46% 규제기간:'03.1.11~'08.1.12
아연철판	7219.49, 7210.61, 7212.30/50,7225.92/9 9, 7226.94/99	반덤핑	'02.5.30	'03.5.27	관세율 49.67% 규제기간:'03.5.28~'08.5.29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5407.42/52/61/69	반덤핑	'04.2.23	'05.8.22	관세율 U\$7.59/kg(5407.61), U\$6.56/kg(5407.69) 주 ¹⁾ - 가격인상 합의(3년간) 규제기간 : '05.8.22~'08.8.22

주 : 한국업체 Seo Kwang Trading Co., Ul Hwa Corp., Daedong, Modacrea Inc., Seong An Co., Ltd., Han Kook Synthtics Inc. 등 6개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HS Code 5407.61의 경우 kg당 U\$6.90, 5407.69 경우 kg당 U\$5.96의 최저가격을 적용

2007년에 신규로 피해사례 조사를 시작한 실적은 없음.

2007년 9월 최저수입가격제도 강화로 건별이 아닌 포괄적 수입규제 시행

- 동 조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를 타깃으로 하고 있음.
- 세부내용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 2007년 8월 30일자 무역통상 정보참조

[이집트]

□ 2007년 2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화학 1건, 기타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타이어	4011.10/ 4011.20	반덤핑	'98.9.30	'99.10.10	관세율 5.5~17% 한국타이어 6.5%(픽업용), 금호 무협의, 우성타이어 5.5% (승용차용), 11%(픽업용), 17%(트럭버스) '05.3.17 반덤핑관세 연장 ('09.10.2.까지)
DOP (Diocetyl Phthalte)	291732	반덤핑	'06.9.12	'07.7.01	2007.7.1~2012.6.30까지 5년간 톤당 US\$ 109 반덤핑 관세 부과 원산지 한국산 제품 모두 해당

□ 한국산 D.O.P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반덤핑 최종 확정

- 판정일 : 2007.7.8일 (관보 No. 150)
-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 2007. 7.1일부터 5년 간
- 제조기업 : 이집트 EPS 사
- 반덤핑 관세 대상 기업 : 한국산 원산지 전 기업
- 반덤핑 관세 : 1톤당 US\$ 109

○ D.O.P 관세 부과로 한국산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타이어를 포함 총 2건으로 증가

- 최근 3년간 한국의 對이집트 D.O.P 수출실적을 보면 2003년 58만 4,850 달러(337.0% 증가), 2004년 94만 9,119 달러(62.3%) 2005년 259만 5,373 달러(173.5%증가), 2006년 1~10월 241만 9,109 달러(38.5%)를 기록함.

[인 도]

□ 2007년 12월 현재 총 22건(조사 중 7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 규제형태별로 반덤핑규제 21건, 세이프가드 1건이고, 품목별로는 화학 14건, 섬유 4건, 전기전자 1건, 기타 3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400259	반덤핑	'96.3.15	'97.7.17	관세율 : US\$1,692.12~2,314.8/톤 '05.6.6 중간재심 결과 금호석유화학 13.22%, 기타 48.75%
2	아크릴 단섬유(ASF)	5501.50 5503.30	반덤핑	'96.9.13	'97.10.24	'02.8.6 일몰재심 결과 \$0.225/kg, 덤핑마진 16.53%
3	합성고무 (SBR)	400219	반덤핑	'98.4.7	'99.8.24	'04.7.28 일몰재심 최종 판정 관세율 US\$6.89/톤, 덤핑마진 8.55%(현재 1900 시리즈 수출물량 없음)
4	NaCn (Sodium Cyanide)	283711	반덤핑	'99.3.8	'00.6.6	'05.9.27 일몰재심 결과 덤핑부과 지속, 관세율:3.71~38%
5	POY(Partially Oriented Yarn)	540242	반덤핑	'01.8.20	'02.9.12	관세율 : US\$0.605/kg
6	가성소다	281511 281512	반덤핑	'02.5.14	'03.9.23	관세율 : US\$ 295.27/톤
7	압연롤	845530	반덤핑	'02.8.27	'03.8.14	관세율 : US\$ 2,851.91/톤
8	소듐 아황산염	283110	반덤핑	'02.11.14	'03.12.3	관세율 : US\$ 1,034.76/톤
9	탄산칼륨	283640	반덤핑	'02.12.19	'04.2.20	관세율 : US\$ 9.45~123.86/톤
10	염화메틸	290312	반덤핑	'03.2.17	'04.9.24	관세율 : US\$ 34.43~42.42/MT
11	유연성판재폴리올 (PPG)	390720	반덤핑	'02.5.11	'05.1.24	관세율 : US\$ 1,472.77/MT SKC 37.01%, 기타 56.87%
12	프로필렌 글리콜 (PG)	290532	반덤핑	'03.8.20	'04.8.10	관세율 : US\$ 1,221.38/MT(29.46%)
13	녹말류	1108, 1903, 3505	세이프 가드	'04.7.8	'05.2.16	Sago, Modified Starches, Starch의 인도내 수입시 향후 3년간 가격기준으로 1차년도 33%, 2차년도 23%, 3차년도 13% 긴급수입관세 부과
14	폴리에스테르사 (PFY)	540243	반덤핑 조사중	'05.6.27	'07.1.24	관세율 : US\$ 64/톤~558/톤
15	나일론 필라멘트사	540210	반덤핑	'05.7.4	'06.7.3	23.74~51.94/kg '06.3.29 잠정세율 US\$3.82/kg

16	PVC	390410	반덤핑 조사중	'06.6.27		N/A
17	인쇄용 플레이트 (PS Plate)	844250	반덤핑 조사중	'06.8.24		N/A
18	아세톤	291411	반덤핑 조사중	'07.2.12		N/A
19	페놀	270760, 290711	반덤핑 조사중	'07.1.11		N/A
20	과산화수소	2847	반덤핑 조사중	'07.7.20		N/A
21	고무화학제품	381210, 381220, 381230, 293420, 292520	반덤핑 조사중	'07.7.6		N/A
22	CD-R	85239050	반덤핑 조사중	'07.9.12		N/A

폴리에스테르사 (PFY, HS 540243) 최종판결 (반덤핑)

- 2007년 1월 24일 최종판결 : 관세율: US\$ 64/톤 ~ 558/톤

2007년 5건의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 아세톤 (Acetone, HS 291411) : '07. 2. 12
- 페놀 (Phenol, HS 270760, HS 290711) : '07. 1. 11
-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S 2847) : '07. 7. 20
- 고무화학제품 (Rubber Chemical MBT, MBTS, CBS and PVI) : '07. 7. 6 (HS 381210, 381220, 381230, 293420, 292520)
- CD-R (Compact Discs-Recordable, HS 8523.90.50) : '07. 9. 12
- 기존에 반덤핑관세가 책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인도 수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최근 조사가 시작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물량을 줄이는 한편 인도 정부에 청원 중.

2건의 반덤핑관세 부과 해제

- 에틸렌고무 (EPDM, HS 400270, HS 400290), PIB (Poly Iso-Butylen, HS 390220)

[일 본]

- 2007년 12월 현재 반덤핑 1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2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1건, 섬유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SF)	5503.20	반덤핑	'01.4.23	'02.7.27	덤핑마진 6~13.5% 피소기업 : 삼영합섬, 성림, 대양산업, 휴비스 등 '07.6월 과세기간 5년연장
D-RAM	8542212010 8473304060	상계관세	'04.8.3.	'06.1.27	관세율 : 하이닉스 27.2% (2010.12.31.까지)

자료 : 농림수산업성, 후생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관련 자료

- 2007년 6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 연장
 - 일본 재무성 및 경제산업성은 2006년 6월 帝人화이버 주식회사, 동래주식회사, 유니치가화이버주식회사의 3사로부터 제출된 과세기간연장 신청으로 조사 개시
 - 기존 덤핑관세부과기간(5년간 : 2001.4~2006.3)중에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덤핑수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덤핑수출이 아니라는 한국기업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함으로 덤핑수출의 계속 및 일본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정하여 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간 연장함.
- 일본의 한국산 DRAM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과 WTO의 일본 상계관세부과 재검토 권고
 - 2006년 1월 20일 일본정부는 하이닉스 DRAM에 5년간 27.2%의 상계관세 부과
 - 우리정부는 WTO에 제소. 2006년 6월 WTO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됨.
 - 2007년 11월 28일, WTO는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부과가 WTO협정에 위반되는 만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정에 부합되는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
 - 일본경제산업성 및 재무성 담당자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WTO의 권고를 따라 한국과의 교섭을 통해 WTO협정에 일치되도록 해당내용을 개정할 방침
- 2006년 11월 24일, 한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닭고기 및 관련 가공식품 수입 금지 조치

[중 국]

□ 2007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은 총 21건(조사 중 1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 21건 모두 반덤핑 규제이며,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15건, 섬유 2건, 철강 1건, 기타 3건임.

○ 2007년 들어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품목은 1건이며 조사 중지 1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 1건, 재심 개시 1건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신문용지	4801.00 4802.61/6910	반덤핑	'97.12.1	'99.6.3	관세율 : 55~78% '04.6.30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폴리에스테르 필름	3920.6200	반덤핑	'99.4.16	'00.8.25	관세율 : 13~46% '05.12.28 재심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7220.20	반덤핑	'02.3.23	'06.4.8	부과기간 연장 (2006.4.8~2010.4.7) 관세율 : 포철 11% 인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포스코 0%, 유니온 3%, HYSCO 12%, 동부 14%, 기타 57%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00.12.20	'02.6.20	관세율 :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07.8.15부터 관세부과 5년 연장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00 5506.2000	반덤핑	'01.8.3	'03.2.3	관세율 : 2~48% 새한, 성림 2%, 휴비스 3%, 삼흥 5%, 대한화섬 33%, 기타 48%
PET 칩	3907.6011 3907.6019	반덤핑	'01.8.3	'05.4.25	'03.4 확정관세(5~52%) '05.4 재심판정(효성 26%)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01.10.10	'03.4.10	관세율 : 2~49%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 4~51%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태화학 4%, 기타 13%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 7~27% '05.12.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07.11.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 6~76%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5~16% 금호p&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 32~96%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관세율 : 7~46% '07.4.16 한국 옴토매직社 재심 진행 결정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관세율 : 28~184%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119%
ECH Epi- 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관세율 :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폴리우레탄	5402.49.20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효성 0%, 동국무역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비스페놀A (PBA)	2907.23.00	반덤핑	'06.8.30	'07.8.29	금호P&B 5.8% LG석유화학 6.4% 기타 한국기업 37.1%
아세톤	2914.11.00	반덤핑	'07.3.9		조사 중

자료 :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공평무역국

□ 1월 31일, 옥탄올 반덤핑조사 중지

- 2005년 7월 15일 중국 石油化工有限公司(齊魯分公司) 등의 제조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EU, 인니산 옥탄올(HS 2905.16.00)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
 - 2006년 9월 15일에는 조사기간 6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함.
- 상무부는 2007년 1월 31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EU, 인니산 수입 옥탄올로 인해 중국산업의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며 조사 중지를 발표함.

□ 3월 21일, 비스페놀 A 반덤핑 예비판정

- 중국 藍星化工新材料有限公司 등의 제소로 2006년 8월 30일부터 조사 개시된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산 비스페놀-A(HS 2907.2300)에 대해 3월 21일 반덤핑 예비판정
 - 3월 22일부터 금호P&B와 LG석유화학의 비스페놀-A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는 중국 세관에 각각 6.9%와 7.9%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기타 한국회사 제품은 37.1%).
 - 중국의 한국산 비스페놀-A 수입 규모는 2006년 1억 1,700만 달러와 2007년(1~3월) 4,200만 달러이며 특히 2007년 1분기 중국의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91.5%나 급증함.
 - 중국은 현재 비스페놀-A 자급률이 30% 수준이므로 반덤핑 예비판정의 의도는 수입 자체를 막는데 있다기보다는 자국 생산업체에 가격경쟁력을 키워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중국이 상위 5대 비스페놀-A 수입 대상국(대만, 한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지역) 모두를 타깃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잘 알 수 있음.
 - 우리 기업들은 각국 기업들의 보증금 납부율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우리 기업들만의 심각한 피해는 없으나 향후 최종 반덤핑 판정 시에는 적극 대응할 예정
 - 반덤핑조사는 2005.4.1~2006.3.31 기간을 대상으로, 산업피해조사는 2003.1.1~ 2006.3.31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30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실시함.

□ 4월 16일, 광섬유 재심 개시

- 중국 상무부는 2005년 1월 1일 부 미국, 일본, 한국산 수입 광섬유에 대한 최종 반덤핑 판정과 관련, 한국 옵토매직 사의 재심 요청을 수용
 - 동 사는 반덤핑 조치 이후 자사 제품의 정상가격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 중국 수출제품의 덤핑 폭이 낮아졌다고 상무부에 재심을 요청함.

□ 8월 14일, 이염화메탄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발표

- 2007년 8월 14일 상무부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한국산 수입 이염화메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을 동년 8월 15일부터 5년 간 연장한다고 발표

□ 8월 29일, 비스페놀A, 반덤핑 최종 판정

- 3월 21일 예비판정에 이어 8월 29일 최종 판정함.
 -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임(한국은 5.8%, 6.4%, 기타 37.1%).

[캐나다]

□ 2007년 11월 28일 현재, 철강 제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구조용 강관	7306.3010/3090/ 5000/6090/6099	반덤핑	'03.3.21	'03.11.17	반덤핑관세 89% - '08.1.31 연장 여부 결정
스테인리스 강선	7223.0011/19/20	반덤핑	'03.11.21	'04.7.30	관세율 : 181% 정상가격 미제출 - 반덤핑관세인하 : '06.6.27부터 컨베이어벨트용 및 오일, 가스산업용은 수출가격의 35%로 하향 조정
동제 관연결구	741210, 741220	반덤핑	'06.6.8	'07.02.19	- 최종판정 : 모든 수출업체에 수출가격의 104% 반덤핑관세 부과 - 덤핑률조정('07.8.16) 정상가를 제출한 정우금속 제외 모든 수출업체에 출가격의 242% 반덤핑 관세 부과

자료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006.11.29

□ 최종판정 품목 : 동제 관연결구류

- 캐나다 관세청(CBSA :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은 2006년 6월 8일 한국, 미국, 중국산 동제의 관연결구류(HS Code 7412)에 대하여 덤핑여부 착수
 -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 : "열기기(Heating), 배관(Plumbing), 공조(Air Conditioning), 냉동기기(Refrigeration Application) 등에 사용되는 배관용 연결구를 의미하며, 최근 캐나다 건설 및 플랜트경기의 호조로 수입이 확대된 품목
- 제조기업은 온타리오 소재의 Cello Product Inc.로 미국, 한국, 중국산 동 관연결구의 덤핑으로 자사 매출 및 이익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년 4월 25일 CBSA에 제소
- 덤핑조사 대상은 동제의 관연결구류(HS 741210, 741220)로 "Tee, Elbow, Bushing, Fitting Reducer, Adapter"이 주대상품목이며 주대상국은 한국, 미국, 및 중국임.
- 캐나다의 연간 동제 관연결구의 수입액은 88백만 미달러로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3백 3십만 달러로 3위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3개국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0~105%의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예비 판정 결과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2006년 11월 3일에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103%~188%의 잠정 덤핑관세 부과를 결정
- 최종 판정 결과 : 2007년 2월 19일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상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수출가의 188%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재조사 및 덤핑률 조정 : 2007년 7월 16일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최종 판정결과를 재심하고, 8월 16일 정상가를 제출한 한국의 정우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 수출가격의 242%의 덤핑관세 부과 결정

□ 기타 신규 제소 현황 : 없음

[태 국]

□ 2007년 12월 11일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2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강판	7208, 7211.13/14/19	반덤핑	'02.7.22	'03.5.27	'04.9.20 반덤핑관세 재부과 13.96%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7219.32/33/34 /35,7220.20	반덤핑	'02.2.22.	'03.3.13	50.99%(CIF)

□ 2007년 수입규제 변동내역 없음.

[인도네시아]

- 2007년 12월 현재, 인도네시아는 2건의 반덤핑관세와 1건의 세이프가드 총 3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진행상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9.16	관세율 7~10% 2009년까지 적용
비코팅 인쇄용지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 59.64% 2009년까지 적용
도자기 식탁·주방 용품	6911, 6912	세이프 가드	'05.5.13	'06.1.4	1차년도 1,600Rp/kg (2006. 01 ~ 2007. 01) 2차년도 1,400Rp/kg (2007. 01 ~ 2008. 01) 3차년도 1,200Rp/kg (2008. 01 ~ 2009. 01)

- 2007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이 없어 2006년 하반기와 동일한 상황에서 11월 초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낮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었으나, 오보로 밝혀진 바 있음.
 - 그러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추이 관찰 필요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는 총 1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금년 12월에 제소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인데 만일 제소가 될 경우 3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터 키]

□ 2007년 12월 현재, 터키는 섬유 5건, 화학제품 1건 등 총 6건의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의 경우 일부 한국 기업들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판정해 최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관세율 40% - 위드, 성안, 창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98.1.27	'99.11.30	- 관세율 : 5.2~10.9% - '04.11 만료후 재조사 - '06.5.18 반덤핑관세 재부과 한국합섬 5.7%, 효성 5.2%, 동국무역 5.5%, 휴비스 5.5%, 도레이새한 5.5%, 기타 10.9%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선경 11.9%, 삼양사.고합24.6% - '06.9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모든 업체 10%)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6.28	관세율 : 33.7%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	5407 일부	반덤핑	'99.11.1	'02.2.13	창운 4.96%, 성안 7.07%, 위드 3.51%, 해동 38.61%, 대광, 동흥무역, 동성무역, 덕동, 현마무역, 승우무역, 서광, 서광무역, 성광, 선문, 을화 14.64%, 최고마진 40.0% - 07.2.11 반덤핑재심연장 조사개시
금속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04.9.24	관세율 US\$2.2/kg
PET	3907.6020	반덤핑	'04.12.9	'06.1.27	관세율 6.5%

* 2007년부터 터키정부가 HS Code 대신 자체 코드(CN Code)로 변경함에 따라 일부 품목의 코드가 변경됨(5402.43->5402.47)

[파키스탄]

- 2007년 12월 현재, 파키스탄은 섬유 2건, 화학제품 1건 등 총 3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염화비닐 (PVC) 수지	3904.10	반덤핑	'04.6.26	'05.2.24	덤핑 관세율 LG Int'l Corp. 40.18%, LG Chem, Ltd. 31.06% - 관세부과 기간 : '04.10.26부터 5년간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33 5402.43	반덤핑	'05.5.12	'06.3.17	효성 29.07%, 동국 0%, 세한 0%, 기타 업체 6.92% 관세부과 기간 : '05. 11. 12부터 5년간 공동 피소국: 인니, 말련, 태국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06.8.9	'07.6.5	덤핑 관세율 - Huvis Corporation : 0% - 타 한국업체 : 2.14% 관세부과 기간 - '07. 2. 9부터 5년간 공동 피소국 : 인니, 태국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확정

- 조치 대상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3개국이며, NTC(National Tariff Commission)의 이와 같은 관세부과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향후 5년간 2.1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됨.

[호 주]

- 2007년 12월 말 현재 화학제품 3건, 철강·전기전자·기타 각 1건 등 총 6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백판지	4810.1390/1356/ 1990/1957/2990/ 2964/9900/9985	반덤핑	'04.12.15	'05.7.28	관세율 : 31.7% '05.7.27 가격인상 약속 발효
철/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52.00/41	반덤핑	'03.8.20	'04.4.2	동국제강 0.4%(이후 미소마진 판정), 포스코, 기타 10.6%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3901.20.00/03	반덤핑	'02.10.11	'03.12.18	대립산업 무혐의, 기타업체 적용 '07.12.3 연례재심 개시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3901.1000/1001/ 9000/9006	반덤핑	'02.10.11	'03.12.3	'05.9.23, 연례 재심결과 현대 무혐의, 기타업체 적용. 내용 대외비 '07.12.3 연례재심 개시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18	반덤핑	'99.4.1	'00.3.24	관세율:9~34%(36.9~75\$/MT) '05.11.9 재심 결과 관세부과 5년 연장
세탁기	8450.1100/1140/ 1103/1104/2000/ 2008	반덤핑	'02.7.15	'03.9.18	관세율:8% LG전자 무혐의 '07.8.21 연례재심개시

- 신규 조사대상이 되거나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없음.

-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의 수는 점차 감소 추세
- 10개(06.6) → 9개(06.12) → 8개(07.5) → 6개(07.12)

□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3건

- 폴리올(PPG, HS3907.20.00/36)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07년 4월 27일 부로 종료됨.
- 열연형강(HSS, HS7261.31.XX)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07년 7월 5일 부로 종료됨.
- 발포성폴리스티렌(EPS, HS3903.11/12)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07년 11월 .5일 부로 종료됨.

[E U]

- 2007년 12월 5일 현재 재심 중인 철강재 관련결구류를 포함 총 4건의 반덤핑규제와 1건의 상계관세규제를 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2건, 철강·화학·섬유 각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CN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ET 칩	3907.6020 ex 3907.6080	반덤핑	'05.12.1	'04.11.26	중간재심 결과, 대한화섬·KP케미컬·SK케미컬 무혐의, 호남석유화학 101.4Euro/t, 동국무역·기타 148.3Euro/t
철강재 관련결구류	ex 7307.9311/ 9319/9930/9990	반덤핑	'01.6.1	'02.8.24	관세율 44% '07.8.18일부로 재심 조사중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99.10.7	'05.3.17	중간재심 결과,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이스트영· 에스탈·금풍·건백·삼흥 6%, 기타 10.6% ('10.3월 종료예정)
양문형 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9.1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 삼문형은 제외
D-RAM	8542.2111/2113/211 5/2117/2101/2105, 8548.9010	상계관세	'02.7.25	'03.8.22	관세율 34.8% '06.4.11 32.9%로 하향조정

- 신규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없으나 10월 29일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cold rolled stainless coil)에 대하여 반덤핑 제소가 EU 집행위에 접수되었음.
- 재심 조사 개시 : 1건
- 철강재 관련결구류 : '02년 8월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 왔으며, '07년 5월 Defence Committee of EU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의 재심 요청에 따라 '07년 8월 18일에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에 대한 만기 재심 조사가 개시되었음.
- 확정관세 부과 종료 : 1건
- 칼라TV : '07년 8월 30일에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 관세(15%) 부과 종료

□ 확정관세 부과 : 2건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 '05년 12월 LMP(low-melt polyester staple fibers)를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중간 재심이 개시되었음.
- '07년 4월 11일에 재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 확정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함.
- 확정관세율은 상기 품목별 현황 참조

○ PET칩

- '05년 12월 만기재심이 시작되었음.
- '07년 2월 27일 재심 결과를 통해 확정관세를 지속부과하기로 결정함.
- 확정관세율은 상기 품목별 현황 참조

□ 중국산 제품의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

○ 실리콘

- 중국산 실리콘이 한국으로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06년 4월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했음.
- '07년 1월 19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선적되는 실리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는 적정서류를 EU측에 제출하도록 함.

품목	CN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실리콘	2804.69	중국산 우회덤핑	'06.4.21	'07.1.19	-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측에 제출기로 함. - '09.3.5 종료예정

3. 2008년 국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가. 총 관

□ 세계적인 자유무역 확산 추세

- 2007년 10월 기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194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됐고, 이 중 111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임.³⁾
- 대표적 對韓 수입규제국가들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여 자유무역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조치 도입은 감소될 전망이다.

□ 중국산 동반규제 주의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일부 국가에서 국내산업의 요구나 실업 감소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신규조치 도입 가능
- 각국의 수입규제조치 도입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대체로 중국산 저가수입품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
- 그러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경계강화로 우리상품에 대한 동반규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보호무역주의 상존

-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미국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 대외무역관련 법안처리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EU도 무역에 노동과 환경을 연계한 신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급증 품목과 관련 수출국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물량조절 등으로 수입규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3) WTO, GATT/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2007.10.2

나. 국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 통상환경 :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

- 2007년 1~10월 동안 남아공의 무역수지 적자는 10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7% 증가
-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도입 비용 급증, 2010년 월드컵 개최 대비 6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때문임.
- 무역수지 불균형 확대가 일반 소비재 수입증가 보다는 국제유가 상승 및 자국의 필요에 의한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향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음.

□ 무역자유화 추진을 통한 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

-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Apartheid) 기간 동안 UN 경제재제로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되었으나, 1994년 흑인정권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 추진을 통해 세계경제권 편입 정책을 펼침.
 - 이에 따라,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FTA 추진 등 무역자유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함.
-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정책 추진
 - 자유무역 확대를 통상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있으나, 남아공 내 높은 실업률(25.5%) 해소를 위해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제지업 등 고용규모가 큰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정책 실시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섬유제품
 - 2007년부터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남아공 섬유바이어들이 한국으로 거래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섬유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공은 섬유산업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우리나라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음.

○ 철강 제품

- 최근 남아공 내 사회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철강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남아공 정부는 철강제품 수입확대 및 수입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율 인하를 추진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철강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남아공 내 철강 제조업체들의 반덤핑 제소 증가가 우려됨.
-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철강제품(MTI코드 2단위 기준)의 對남아공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뉴질랜드]

□ 2007년도 GDP 성장률이 3.1%로 추정되는 가운데 2008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되어 2.8%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2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경기 과열 및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중앙은행의 경기 억제정책에 따른 것임.
- 도하라운드 중단 이후 FTA 추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과 FTA 협상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음.

□ 자유무역 지향

- 주요 공산품의 수입과 농산물 수출을 위해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전년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음.
- 기존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 이어 현재 협상 진행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주재국 경제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조치로 총수입액의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2003년 9월 정책 예고를 통해 의류, 신발, 카펫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5~17%의 수입관세를 2006년 7월부터 점차 인하하고 있으며 APEC에 논의에 따라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높음.
- 5~17%의 현행 관세율을 2009년 7월까지 5~10%로 인하할 계획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무역 자유화를 통해 자국의 이득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규제가 특별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일부 현지 제조업체의 로비와 산업보호 목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 수입규제 가능성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對뉴 수입은 목재, 낙농제품, 소고기 등 1차 산업제품이,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및 기업과 이해대립이 적은 관계로 2008년도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겠으나 2007년도 다이어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처럼 세부 품목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상존

[대 만]

□ 개방적 통상정책 전망

- 2008년에는 금년에 이어 민간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내수 부문의 성장이 제고되는 한편 수출성장세가 둔화되어 금년에 비해 다소 낮은 4.5%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대만의 기본적인 자유무역주의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3월 22일에 실시되는 총통 선거 이후 구성될 신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은 현 정부에 비해 보다 개방적일 것으로 전망됨.

□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 없음.

- 대만은 자국 제품 및 산업이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규 제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국 제품 수입규제와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음.
 - 한편, 중국산 품질불량 제품의 대량 유입을 경계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의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여부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한국 제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우리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를 줄여야 함.
 - 2006년도에 우리나라 표고버섯이 중국산 제품으로 오인되어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음.

[러시아]

□ 경제성장세 지속, 수입시장 규모 확대

- 러시아 정부에서 향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정책은 우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아시아 등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 아울러, 다른 광물성 지하자원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토록 유도하며, 지하자원 가공 산업의 발전을 견고히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 한편, 비에너지 부문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육성과 해외 생산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 및 운송 분야의 발전 및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최근 주목을 받아온 러시아의 WTO 가입은 2007년에도 실현되지 않았음. 아직 사우디 아라비아, 그루지아 등과 양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자간 협상에서도 농업부문 보조금, 지적재산권, 식물검역, 기술규제, 수출관세부과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러시아는 WTO 가입 확정시 평균 수입 관세를 기존 12.9%에서 11.5%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회색 통관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점⁴⁾, 기계류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통관⁵⁾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높은 물가 상승률을 막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점⁶⁾ 등이 긍정적인 수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현재 없는 상황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산업용 폴리아미드 원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규제 품목의 변동이 있을 것임. 반면 중국산 철강 파이프에 대한 수입규제가 예상됨.

4) 러시아 정부는 전자제품의 회색 통관(grey import)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무관세 통관을 실시하고 있음.

5) 2007년 6월부터 9개월간 러시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에 대해서 한시적 무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장비, 재봉기기, 레이저기기, 자외선 적외선 X-ray 기기 등이 추가되었음.

6) 러시아 정부는 2007년도 물가상승률이 10~11%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우유, 치즈 등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5%로 인하하였음.

[말레이시아]

□ 수출입 등 교역 장려

- 말련 정부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 등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수출이 말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연관 산업의 미발달로 수출증가는 필연적으로 기계류, 부품 등의 수입증가를 동반함. 또한 중간재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역 제재가 미미한 편임.

□ 상호보완 교역구조로 통상마찰 가능성 낮음.

- 한국에 원유, LNG 등 원재료를 주로 수출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을 수입하는 등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 마찰 가능성이 낮은 편. 말련의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건수는 평균 1건 정도임.

□ 수입규제 주목 품목 없음.

-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천연가스, 원유 등 자원 수출의 호조로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
- 우리의 對말레이시아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집적회로 반도체, 모니터는 무관세 품목이며 철강은 50%의 고관세 보호 품목으로 덤핑 수출이 불가능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멕시코]

□ 개방적 통상정책 유지

-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대외무역 시장개방으로 요약됨.
 - 최근 멕시코는 지체되고 있던 한-멕시코 FTA, 멕시코-페루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기존의 통상개방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평균관세를 11.94%에서 9.77%로 인하하는 등 수입장벽을 낮추고 있음.
 - 이러한 통상정책 방향으로 볼 때, 수입규제가 강화될 여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석유화학제품, 섬유, 안정기 등 제소 우려

- 최근 멕시코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음. 한국산 품목의 수출급증 시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음.
-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신발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여파로 한국산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 정부는 현재 중국산 안정기(HS 8501, 8548)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전기제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 안정기에 대한 제소 가능성도 있음.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멕시코의 對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006년 기준 54.8억 달러 규모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크지만 대부분의 수입품목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간재 수입으로, 보세임가공산업(마킬라도라) 위주의 제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의 특성 상 중간재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적용 가능성은 낮음.

[미 국]

□ 민주당 의회 장악 이후,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

- 지난 5월 신무역정책(New Trade Policy)을 발표하여 무역과 노동, 환경 기준 강화 이슈를 연계. 페루, 파나마, 한국 및 콜롬비아와 기 체결된 FTA 협정문 내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을 촉구
- 대중 적자 확대 문제를 시정하고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 개시
 - USTR은 지적권침해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6년에만도 WTO에 3건 제소
 - 미 의회에서는 위안화 추가 절상을 위해 중국제품에 대한 일괄적 추가관세 부과, 중국환율정책에 상계관세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
 - 이제까지 개시된 모든 Section 421(대중국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공익위배를 이유로 구제조치 발동을 거부하자, Max Baucus 상원재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Section 421 조항 개정(대통령 유예권한 축소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임.

- 지난 6월말 만료된 무역촉진권한(TPA)이 연장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하에서는 이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이와 같은 보호주의 성향은 2008년도 대선열기에 편승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 수입규제 조사개시 감소세

- 2004년 이후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감소세(2004년 조사개시 건수 11건, 2006년 4건)인 반면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미국기업의 제소건수는 급증. USITC를 통해 미국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됐다고 판정 시 수입배제, 판매 금지 등으로 결국 해당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업계 시황호전으로 제소가 줄어들어 2004년 이후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개시 건수(8건)가 전체의 25%를 차지
-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소가 주를 이룸.
 - 2006년 1~9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도 동기대비 13.61% 증가한 1,660억 달러를 기록(총 무역수지 적자의 약 27%를 차지)

[브라질]

□ 룰라 2기 정부 출범, 수출촉진정책 강화

- 2007년에는 룰라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금리인하, 수출확대,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강화 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수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해알화 강제 현상 지속으로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룰라 2기 정부에서는 환율정책 및 수출촉진정책, 수입증가에 대한 대책 등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998년부터 강화된 수출촉진정책은 룰라 정권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룰라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룰라의 2기 정부 대선공약에 따르면, 고부가가치품목 수출 장려, BNDES, Proex, 수출보험 등을 통한 수출장려책 확대, APEX(브라질무역투자진흥기관)의 해외지사 확대, 외국제품의 범람에 대응한 특정분야에 조치를 취할 것 등 수출장려 및 수입증가세에 대한 대책 등이 나와 향후에도 수입증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 증가 가능성 존재

- 대외통상정책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보다는 남남협력 및 대 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산 타이어, 최저 가격제 시행으로 타격

- 한국산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 수출증가율이 100%대를 넘는 수출호조 품목이었으나 올 8~12월까지 브라질 정부의 수입 최저 가격제 시행으로 타격을 입었음.
- 현재는 브라질 수입당국이 최저 가격 하향조정으로 문제가 없으나 향후에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자국 품목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품목에는 유사 조치 가능성 존재(예: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저가 장난감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아르헨티나]

□ 경제성장세 지속

- 2003년 이후 매년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2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06년도 경제성장률은 8.5%, 2007년도는 7.5%의 성장률 추정
- 소득증가로 수입수요 지속적 증가
 -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자본재와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급증(30%)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
- 한-아르헨티나 교역도 확대추세로 2006년도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3억5000만 달러, 수입은 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급증에 대한 우려 확대
 - 중국산이 수입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저가품 수입증가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 통상정책 방향

- Mercosur와의 협력 강화
 - 베네수엘라의 Mercosur가입, 남미은행 설립 등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정책의 다변화

- 신임 Ms. Cristina 대통령은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전통적인 협력국가인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

- 자국 산업육성을 위하여 고환율정책, 수입최저가격제도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아르헨티나 정부의 관심분야에 대해 주의 필요

- 육성산업 : 전자재, 제지, 자동차, 소프트웨어, 특수강, 피혁, 의류, 화학, 식품
- 감시품목 : 냉장고, 세탁기, 주방기기, 오토바이, 타이어, 섬유, 신발, 완구, 가전제품, 휴대폰 등 국내 생산기반 구축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

○ 그러나 2007년 9월 수입최저가격제도 강화로 향후 개별 덤핑판정은 없을 것이나 필요시 수입허가 기준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 한국 수출 급증 및 무역흑자 확대에 수입 규제 가능성 상승

○ 對우크라이나 수출 급증 품목 : 자동차 부품, 자동차, 합성수지, 냉장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무전화기 등

○ 시장 경제 지향 : 2007년 9월 30일 총선 이후 친서방 시장경제정책을 지향하는 내각 구성이 확실시 되고 있어 서구 국가들의 수입 규제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2005년부터 무역 적자가 증가하여 금년도 1~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가 증가한 67억 달러에 이르자 수입 억제를 위하여 반덤핑 조사 등의 규제 조치 확대 추세
- 우크라이나의 총 무역 적자 중 한국과의 무역 적자 비중이 약 15% 이어서 한국산이 수입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상존

[이집트]

□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개방 확대

- FTA 체결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적 실리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수입규제 억제
 - 다만, 이집트 정부의 육성산업에 대한 피해 예상 품목과 중국 및 동남아산 저가 상품 유입에 대해서는 수입 억제 조치 강화 예상
- 원유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수출과 자본재 및 산업용 기초제품 수입 구조로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재 수입에 대한 개방 확대와 서비스 수지 증가가 예상되어 과도한 무역규제 조치는 없을 전망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양국간 교역 구조상 이집트의 對한국 수입은 자국 산업화를 위한 부품, 원부자재, 기계 설비 등에 집중돼 특정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은 없음.
- 최근 수입규제 품목은 중국 및 동남아산 자동차 타이어, 문구류 등 소비재 제품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무리한 저가 진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도]

□ 수입규제 최대 발동국

- 전 세계 반덤핑 신규 조사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인도는 무역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수입규제를 자국산업 보호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등 세계 1위의 수입규제 발동국임. 또한 2007년에 대외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된 바 있어 2008년에도 반덤핑관세를 이용한 수입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 인도는 2007년 기본관세를 2.5% 인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무역국과의 FTA를 체결했으며(태국과의 FTA는 조기자유화 품목만 발효 중), 한국과도 협상중임. 한편 2008년 초에는 한국 및 ASEAN과 FTA를 체결되고 일본, EU 등과 FTA협상도 심화하고 있음. 이처럼 자유무역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음.
- 최근의 수입규제 조치는 중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음.

- 주요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이며 2007년 들어 석유화학제품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한 바 있어 2008년에도 신규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
 - 2007년(1월~9월 기간중)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32.9%에 달함.
-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한 품목 중 2006년 4월~2007년 3월 수출실적이 150만 달러를 초과하고, 전년 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80% 이상 증가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전년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제품이 수입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폐놀의 경우 2006년 1월~6월 기간 중 수출량이 182%나 급증했던 바 있으며 올해 1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 주로 화학제품 및 섬유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 전기전자류 등의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전반적인 對인도 수출에도 큰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님.

<2006년 4월 ~ 2007년 3월 기간 중 對인도 80%이상 수출증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연번	HS코드	품 목	2005 수입액	2006 수입액	증가율 (%)
1	2710	Oil (Not Crude) From Petrol & Bitum Mineral Etc.	0.00	396.57	N/A
2	2709	Crude Oil From Petroleum And Bituminous Minerals	0.00	72.57	N/A
3	2712	Petroleum Jelly; Mineral Waxes & Similar Products	0.00	2.40	N/A
4	9406	Prefabricated Buildings	0.13	4.96	3622.7
5	8424	Mech Appl To Disperse Liq Etc; Sand Etc Blast Mach	1.74	27.54	1480.2
6	8468	Machines, Solder Etc; Gas Surf Temper Machines, Pt	2.29	31.83	1288.9
7	7502	Nickel, Unwrought	0.19	2.40	1170.7
8	2910	Epoxides With A 3-Memb Ring & Halog, Sulfon Etc	0.27	2.96	998.3
9	2807	Sulfuric Acid; Oleum	0.41	3.60	777.1
10	8439	Machinery For Making Pulp & Making Etc Paper, Pts	0.38	2.71	622.1
11	7202	Ferroalloys	2.04	14.30	602.0
12	2903	Halogen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0.36	2.37	552.8
13	7308	Structures Nesoi &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1.72	9.25	436.4
14	7225	Fl-Rl Alloy Steel Nesoi Nun 600Mm Wide	10.01	46.41	363.5
15	8506	Primary Cells & Batteries, Parts	1.76	8.02	354.8
16	7204	Ferrous Waste & Scrap; Remelt Scr Iron/Steel Ingot	2.75	11.51	318.4
17	8455	Metal-Rolling Mills And Rolls Therefor; Parts	2.13	8.70	309.0
18	8428	Lifting, Handling, Loading & Unload Machines Nesoi	9.12	35.79	292.5
19	8462	Machine Tools For Forging, Bending, Stamping Etc	10.15	39.70	291.4

20	8515	Electric, Laser Or Oth Light Or Photon Beam Etc	3.54	13.07	269.1
21	8461	Machine Tools For Shaping, Slotting, Gear Cut Etc	1.30	4.37	235.8
22	8407	Spark-Ignition Recip Or Rotary Int Comb Piston Eng	8.41	27.88	231.4
23	8441	Mach For Making Up Pulp & Paper, Inc Cutters, Pts	0.92	3.02	229.4
24	8707	Bodies (Including Cabs), For Specif Motor Vehicles	0.91	2.94	222.1
25	2809	Diphosphorus Pentaoxide; Phosphoric Acid Etc	2.31	7.39	219.9
26	8543	Electrical Mach Etc, With Ind Functions Nesoi, Pts	2.81	8.88	215.9
27	3824	Binders For Found Molds; Chemical Prod Etc Nesoi	1.09	3.14	187.6
28	8460	Machine Tools For Honing Or Finishing Metal Etc	1.15	3.23	180.2
29	8518	Microphones; Loudspeakers; Sound Amplifier Etc, Pt	2.43	6.70	175.9
30	7219	Fl-Rl Stainless Steel Products, Not Und 600Mm Wide	15.03	41.34	175.0
31	7228	Al Steel Nesoi Bars, Ang Etc; Hol Dr St Bars Etc	2.68	6.69	149.8
32	7208	Fl-Rl Iron & Na Steel Nun600Mm Wd Hot-Rl, Not Clad	82.02	195.67	138.6
33	8479	Machines Etc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esoi, Pt	45.00	106.28	136.2
34	2849	Carbides	0.84	1.97	134.4
35	8529	Parts For Television, Radio And Radar Apparatus	33.09	75.17	127.2
36	7213	Bars & Rods, Iron & Na Steel, H-R Irreg Coils	1.14	2.54	122.4
37	8517	Electric Apparatus For Line Telephony Etc, Parts	23.82	52.75	121.5
38	3206	Coloring Matter Nesoi; Coloring Prep Nesoi, Etc.	0.79	1.72	117.6
39	3403	Lubricating Preps, Antirust & Treating Textiles Etc	0.91	1.85	102.7
40	7608	Aluminum Tubes And Pipes	1.22	2.45	101.1
41	7108	Gold (Incl Plat Plated), Unwr, Semimfr Or Powder	0.96	1.90	99.4
42	8417	Industrial Or Lab Furnaces & Ovens, Nonelect, Pts	2.13	4.15	95.0
43	9801	Expts Of Repaired Impts; Impts Of Returned Expts	49.88	96.54	93.6
44	2901	Acyclic Hydrocarbons	1.85	3.57	92.9
45	8453	Machinery For Work Leather Etc & Footwear Etc, Pts	1.66	3.14	89.6
46	8443	Print Mach Incl Ink-Jet Mach Ancil T Prnt Pt Nesoi	3.27	6.13	87.7
47	9027	Inst Etc For Physical Etc Anal Etc; Microtome; Pts	0.82	1.51	84.4
48	7606	Aluminum Plates, Sheets & Strip Over .2Mm Thick	1.32	2.40	81.8
49	2613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5.95	10.81	81.7
50	8534	Printed Circuits	2.27	4.10	81.0

자료 : World Trade Atlas

주 : 인도 정부 수출입집계가 '07년 3월까지 발표된 상황임. 15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대상

[인도네시아]

□ 통상정책 방향

- 인도네시아 통상정책 기조는 FTA 활성화로 방향이 잡혀 있으나, 내수 시장 방어를 위한 틀로서 반덤핑 관정 등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거질 경우,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동북아 국가 제품을 타깃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비관세 장벽의 강화

-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이 빠르게 개방됨에 따라, 이를 커버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조치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통관 검사 강화나 수입허가 절차의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통관절차의 개선 및 선진화라는 명분 하에서 수입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강화 중임.

□ 품질기준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

- 기존의 공산품 국가표준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며, 당장 금년에는 마늘, 내년에는 사과와 코코아 등에 품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함.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수출 급증 및 무역수지 불균형 품목
 -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이 급증한 품목으로는 텔레프린터, 페놀수지, 섬유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한 품목과도 관련이 깊음.
- 업종별 협회 불만 품목
 -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수입량 급증에 대해 불만이나 우려가 제기된 품목으로 가전업계와 섬유업계가 지난해부터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하고 있음.
- 자국 산업 육성 품목
 - 또한 자국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 원자재 가공품, 제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일 본]

□ 규제완화정책

- FTA 체결 확대, 각종 경제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추진
 - 국민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
 - 2007년 7월 20일, 수입품의 안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수입품의 안전확보에 관한 긴급관민합동회의" 개최
 - 모방품·해적판확산방지조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체결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
-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에 관한 수입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함.
 - 농수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토마토, 피망 등 긴급감시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농수산물의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납치, 굴, 고추 등 수입검사명령 대상품목 20개 품목에 이르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

[중 국]

□ 대외 교역의 지속적인 성장

- 중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전반적인 비용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수출 9,690억 7,000만 달러(전년 대비 27.2% 증가), 수입 7,916억 1,000만 달러(20.2% 증가)로 교역 총액이 1조 7,609억 9,000만 달러(23.8% 증가)에 달하면서 무역수지 흑자액이 1,774억 6,000만 달러(74.0%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상무부는 2007년 연간 교역 전망치를 수출 1조 2,000억 달러, 수입 9,5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간 무역수지 흑자액이 2,500억 달러 수준에 달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무역수지흑자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가 국내 외환보유고를 필요 이상 수준으로 불러놓았고 이는 다시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되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정책 선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위안화 환율 및 기타 문제로 까지 확대 연결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최근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중국과 무역 분쟁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조치라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속도 조절하고 수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정책을 펴고 있음.
- 2006년 이래 가공무역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률 인하 조치, 철강류 수출허가관리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인 수출 억제조치로 당분간 유지될 전망

□ 반덤핑은 정책 기조 유지 예상

- 향후 중국은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곧 반덤핑 정책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내수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재고 누적, 기업마진폭 축소 등의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규제는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음.
- 특히 기업 마진 폭 축소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제품 간 가격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에게 가격경쟁력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음.
- 이에 따라 2008년 반덤핑 정책은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려되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對중국 수출 증가율이 2006년 10% 초반 대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 들어 20% 선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경우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여 온 중국의 對한 반덤핑 공세가 다시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 화공, 철강 등 반덤핑규제 우려 여전

- 1997년 이후 2006년까지 취한 총 47건의 반덤핑 조치 가운데 32건이 화공 제품에 집중
 - 2007년 10월 31일 현재 중국의 對한 반덤핑 조치 21건(조사 중 1건 포함) 가운데 12건(54.5%)이 화공제품임.
 - 화공제품은 한국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동시에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하고 중국으로서는 자국기업 육성이라는 전략적 포석도 두고 있어 규제 가능성이 여전
 - 철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직접 경쟁하는 부분은 많지 않으나 중국 내 생산량이 이미 과도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도 수출물량 조절에 나서고 있어 중저가 제품의 수출 시 특히 주의를 요함.

[캐나다]

□ FTA체결 확대를 통한 교역 활성화

○ 미국-멕시코(NAFTA),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등 총 6개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는 2007년 6월 EFTA 협상을 종료하는 등, FTA 체결 활성화를 통한 對미 의존적 구조 탈피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가함.

- 협상 중 : 중미 4개국, 한국(11월 4주 11차 협상), 싱가포르, 도미니카공화국

- 검토 중 : 안데안공동시장, CARICOM, EU, 일본.

□ 대한 수입규제 예상 품목

○ 수입규제 고려대상은 없는 것으로 전망

- 금년 9월 기준,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서 자동차(3.7%), 휴대폰(2,867%), 타이어(9.8%), TV(60.0%), 세탁기(60.0%), 건조기(66.0%)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제품은 소폭 성장 혹은 감소를 기록

- 상기 언급한 제품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나머지 제품들의 수입액이 그리 많지 않고, 수입규제 조치를 받을 만큼 크게 증가한 제품은 없음.

○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일부업계, 한국과의 교역에 불만제기가 변수

- 캐나다자동차산업노조(CAW)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도 한-캐 FTA체결 시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 특히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는 2006년 초에도 캐나다 정부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수입시장에 대해 조금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 자동차 및 관련제품에 대한 제재조치 단행 가능성은 없음.

- 다만 자동차산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특히 캐나다화 강세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캐나다 제조업체들의 수출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임.

- 한국산의 수입증가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 상존

[태 국]

□ FTA 추진에 적극적

- 2007년 12월 현재 ASEAN 및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이외에 인도, 중국, 바레인 등과는 일부 품목에 대한 조기자유화 성격의 관세인하를 실시 중에 있기도 함.
 - 태국정부가 FTA추진에 있어 이같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FTA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양질의 제품이 수입되어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선시키는데 핵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구탁신 정부이래 추진되는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였으며, 쿠데타 이후 신정부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통상 정책 방향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목적으로 주요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별 반덤핑조치가 부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특별히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터 키]

□ 자국산업보호에 기준 엄격

- 2007년 10월 현재 터키의 수출액은 약 862억 달러, 수입 1,370억 달러로 50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현 정권의 재집권 후 무역수지 적자폭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달러화 약세 등 대외적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에도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2007년 10월 현재 터키의 11번째 수입대상국으로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36억 달러에 달함. 터키의 對한국 수출은 2.5억 달러에 그치고 있어 터키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터키 산업특성상 자동차, 전자 산업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철강, 석유화학, 산업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이 같은 한-터간 산업구조 차이에 따른 수출입구조가 지속되는 한, 터키의 對한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수출 중심의 경기 부양 정책 지속

- 터키는 현재 내수시장의 소비가 위축되었다고 판단,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유로화 강제 및 EU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터키제품 선호에 따라 터키의 최대 수출시장인 EU에서의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제품의 경우 내수생산품 대신 저가의 수입품이 터키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매년 4백억 달러 이상의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가 터키 경제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터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터키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수입규제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주력 산업들의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통관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도록 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수입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섬유 등 터키 주력품목 수출시 주의

- 현재는 일부 섬유류에 국한되고 있으나 터키의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철강, 선박 등)의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국산업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다고 판단될 시 점진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분석

[파키스탄]

□ 수입규제 강화보다는 개방

- 현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자국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수입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정부의 산업화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발효된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및 중국과의 FTA 체결 등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이란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수입규제 예상 품목

- 10월 말 기준으로 2007년도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수출액은 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약 4억 달러로 34.9% 급증하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급속히 해소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파키스탄 측에서 우리기업을 특정목표로 한 통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음.
-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급증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기계류 등이며 파키스탄의 자체 생산 능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함.
- 상기 수출급증 품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특별한 추가 제재 움직임은 없음.
- 그러나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섬유, 의약품 등 현지 생산이 비교적 활발하고 관련 협회의 영향력이 큰 분야에서 반덤핑 제소 등이 추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음.
-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세관통제 강화를 통해 탈세 및 밀수를 강력하게 재제함에 따라 향후 국내기업의 對파키스탄 수출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호 주]

□ 수입규제 전망

- 유리한 세계경제 여건, 국내 경제 지표의 안정세에 힘입어 2007년 호주는 3.5%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호주의 산업구조 및 최근 호주화 강세에 따른 수입구매력 상승에 따른 것으로 무역적자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무역정책의 급변을 가져오거나 수입규제를 강화할 정도의 거시경제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호주는 선진국 중 가장 활발하게 FTA 체결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양자간 협상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 ASEAN, 말레이시아, GCC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일본과의 협상 시작이 예정돼 있음.
- 전반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이와 같이 FTA를 통해 경쟁력 낮은 공산품 수입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등 강화를 통해 자국상품의 입지를 높이는데 무게를 두고 있음.

- 국제 통상 정책은 호주 여야의 정책대립이 가장 적은 분야로 평가되어 왔음. 따라서 2008년에도 기존과 큰 변화없이 수입규제를 포함한 통상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1~10월 중 한국의 對호 수출은 전년도 대비 3.5%의 감소를 보이는 등 큰 부진을 보이고 있어 대한 수입이 이슈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기존 주요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어 특별히 규제가 우려되는 품목은 없음.
 - 더구나 중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아진 상태임.
 - 또한 국제원자재가가 재상승한 상태인데다 그간 공급라인에서 흡수해오던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반덤핑관세부과로 이들 품목의 수입비용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호주의 수입규제 수위가 낮아지는 추세이나 제소 자체는 개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E U]

□ 수입 규제 전망

- 대중 통상압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역외국에 대한 견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양자간 및 다자간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관심 분야 역시 상품 분야에서 벗어나 서비스, 환율, 노동권, 환경, 인권 등 계속 확대될 것임.
- 역외국와의 FTA 추진이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임.
 - ASEAN, 인도와의 FTA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며, EU집행위는 이 두 지역과의 FTA를 향후 2년 내에 체결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2008년 역외 통상정책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임.
 - 환경이슈가 내년도 역외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임.
 - 수입철강에 대한 탄소세 도입 압력,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자동차 형식승인 기준에 대한 EURO 6 제정, 유럽·아시아 자동차업계와 EU 집행위간의 자율감축약속 평가 등이 역외 통상정책의 주요부분으로 부상

- 특히 탄소세 도입은 유럽 철강업계는 물론이고 일부 회원국 정부에서도 아시아 철강업체, 특히 중국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를 이유로 EU 집행위에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 EURO 6 기준 제정과 자동차 업계의 CO2 감축 자율협정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관련 업계간 이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들 기준과 협정은 우리 업계에도 직접 적용되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 집행위는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 및 일본 자동차업계에 대해서도 자율협약상의 감축기준 준수가 미흡하다고 비난하면서 자율협약이 충분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만큼 강제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EU 규정이 강화될 것임.
- 2007년 마텔사의 중국산 완구 리콜을 계기로 소비재제품 안전에 대한 EU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져, 어떠한 형태로든 EU의 제품 안전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 화학물질 등록제도(REACH)에 따라 유럽화학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이 2008년 6월 설치되어 사전등록이 시작될 것이므로, 화학제품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저가 및 저품질 제품의 EU시장 내 판매가 어려워질 것임.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철강제품
- 수입철강에 대한 유럽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가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어 對EU 수출이 급증한 철강제품들에 대한 주의 요망
 -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증가가 특히 두드러진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준비하였으며 10월 29일 이중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장을 EU 집행위에 공식 제출함.
 - 제소대상 품목 : 냉연코일(중국, 한국, 대만산), 아연도금강판(중국산)
 - 2007년 1~7월 중 EU의 철강 총수입은 2,220만 톤으로 對중국 수입은 총 7백만 톤으로 165%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90만 톤으로 98% 증가함(유럽통계청)
 - 한국의 경우 아연도금강판 제소대상국으로 중국과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제소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추가 제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됨
 - 아울러 EUROFER가 여타 철강제품(rod, plate)에 대해서도 잇달아 반덤핑 제소를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으므로 비록 주 견제대상국이 중국이지만 냉연코일과 마찬가지로 함께 제소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 폴리에스테르 파이버직물

- 올해 초 대만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및 인도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28%에서 40%로 급증했음(수입증가율은 한국 50% 이상, 인도 7,380%).
- 한국산의 경우 이미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며 수입단가 역시 크게 인하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산의 경우 수입단가가 평균 수입단가보다 12%나 낮아 인도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첨부

<국별 수입규제 현황>

(2007.12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남아공	4	0	0	1	5
대만	1	0	0	0	1
러시아	0	0	0	1	1
말레이시아	3	0	0	0	3
멕시코	1	0	0	0	1
미국	12(2)	1	4	0	17(2)
아르헨티나	3	0	0	0	3
우크라이나	1(1)	0	0	0	1(1)
이집트	2	0	0	0	2
인도	21(7)	0	0	1	22(7)
인도네시아	2	0	0	1	3
일본	1	1	0	0	2
중국	21(1)	0	0	0	21(1)
캐나다	3	0	0	0	3
태국	2	0	0	0	2
터키	6	0	0	0	6
파키스탄	3	0	0	0	3
호주	6	0	0	0	6
EU	4	1	0	0	5
합 계	96(11)	3	4	4	107(11)

주 : ()안은 현재 조사 중 건수. 재심은 현재 조사 중에서 제외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2007.12 현재)

국 가	철 강	전기전자	화 학	섬 유	기 타	합 계
남아공	2	0	2	0	1	5
대만	0	0	0	0	1	1
러시아	1	0	0	0	0	1
말레이시아	0	0	2	0	1	3
멕시코	0	0	0	1	0	1
미국	11(1)	1	3(1)	1	1	17(2)
아르헨티나	2	0	0	1	0	3
우크라이나	0	0	0	0	1(1)	1(1)
이집트	0	0	1	0	1	2
인도	0	1(1)	14(5)	4	3(1)	22(7)
인도네시아	0	0	1	0	2	3
일본	0	1	0	1	0	2
중국	1	0	15(1)	2	3	21(1)
캐나다	3	0	0	0	0	3
태국	2	0	0	0	0	2
터키	0	0	1	5	0	6
파키스탄	0	0	1	2	0	3
호주	1	1	3	0	1	6
EU	1	2	1	1	0	5
합계	24(1)	6(1)	44(7)	18	15(2)	107(11)

주 : ()안은 현재 조사 중 건수. 재심은 현재 조사 중에서 제외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중국 비즈니스 이정표 :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2007.2
07-005	대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7.3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3
07-010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2007.4
07-113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2007.4
07-014	EU 가입 3주년,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변화 추이	2007.4
07-015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2007.5
07-016	발칸국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2007.5
07-017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2007.5
07-018	WTO 가입 후 베트남 섬유산업 환경변화 및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07.6
07-019	대중수출 품목구조 변화와 주요 요인	2007.6
07-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7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7.6
07-021	인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전망	2007.6
07-022	북중변경무역현황과 전망	2007.6
07-023	M&A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	2007.6
07-024	미래를 위한 준비, 중동의 탈석유화 정책	2007.6
07-025	중국 증치세 환급률 인하의 영향과 전망	2007.7
07-026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현주소	2007.7
07-027	아세안을 잡아라1-아세안 주요시장 수출유망 품목	2007.7
07-028	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중 FTA - Grand Survey 2007	2007.7
07-029	사례로 보는 신흥시장선점 효과	2007.7
07-030	일본 통신판매 시장현황 및 한국기업 진출방안	2007.7
07-031	EU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REACH)에 대한 현지 대응사례 및 시사점	2007.7
07-032	북미시장 핵심 소비계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7
07-033	한중수교 15주년, 중국이 평가한 한국과 한국기업 경쟁력 현황	2007.8
07-034	뉴질랜드를 통해 살펴본, 국가브랜드 전략 성공 키워드	2007.8
07-035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조사	2007.9

07-036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007.9
07-037	아세안 주요국 투자여건 비교	2007.9
07-038	EU-멕시코, EU-칠레 FTA 체결 전후의 양측간 무역, 투자흐름	2007.10
07-039	블루오션전략도 안통하는 중국시장	2007.10
07-040	미지의 아프리카, 기회의 대륙으로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현황과 시사점 -	2007.10
07-041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 현지화 전략 사례	2007.10
07-042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판로 : 개도국시장의 의의와 진출 방안	2007.11
07-043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의 영향과 전망	2007.11
07-044	중아 주요국의 민영화 추진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07.11
07-045	동남아 신흥 중산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11
07-046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수출전망	2007.12
07-047	2007 세계의 틈새시장 틈새품목	2007.12

● 무공자료

번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중국 지재권 백서	2007.2
07-004	2006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 결과보고서	2007.6
07-005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6
07-006	유럽 완성차 기업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현황 및 Tier1.2 동향 조사	2007.6
07-007	브라질 비즈니스 가이드	2007.6
07-008	중국투자실무가이드/증보판	2007.7
07-009	2007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0	2007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1	일본의 국가브랜드 육성전략	2007.7
07-012	중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3	대만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4	일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5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6	인도네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7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8	인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9	태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0	필리핀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1	방글라데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2	말레이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3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4	아랍에미리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5	이집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6	나이지리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7	알제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8	미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9	캐나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0	브라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1	멕시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2	독일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3	폴란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4	체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5	슬로바키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6	헝가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7	루마니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8	터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9	러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0	카자흐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1	우즈베키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2	2007 서울국제식품전, 2007 서울국제식품기술전 종합결과보고서	2007.7
07-043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7
07-044	중국 新노동계약법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07.7
07-045	한눈에 보는 중국 주요도시 투자환경	2007.8
07-046	중남미 IT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7.8
07-047	설명회 CRM 무작정 따라하기	2007.8
07-048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2007.9
07-049	유럽 주요국 자동차부품 After-saler Market 진출 가이드	2007.9
07-050	사모펀드 이야기	2007.9
07-051	FTA 원산지규정 활용가이드	2007.9
07-052	2007 세계 주요도시 투자여건	2007.9
07-053	2006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07.9
07-054	미주지역 항공산업 진출전략	2007.10
07-055	중동아프리카 플랜트기자재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7.10
07-056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2007.10
07-057	일본 온라인 게임 시장 동향	2007.10
07-058	중동 유럽 건설 프로젝트 진출 환경	2007.10
07-059	인도네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7.10
07-060	미개척 자원부국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2007.10
07-061	미국투자 실무가이드	2007.11
07-062	한국의 중남미 투자와 진출전략 연구	2007.11
07-063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2007.12

07-064	필리핀 투자실무가이드	2007.12
07-065	콜롬비아 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7.12
07-066	베네수엘라 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7.12
07-067	브라질 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7.12
07-068	페루 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7.12
07-069	칠레 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7.12
07-070	아르헨티나 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7.12
07-071	극동러시아 비즈니스 가이드	2007.12
07-072	외국인직접투자 업무편람	2007.12
07-073	외국인직접투자 Q&A	2007.12
07-074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실무해설집	2007.12
07-075	2007 한국-중국 투자환경비교조사	2007.12

● 설명회자료

번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2007.3
07-003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7.4
07-004	발칸국 투자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2007.5
07-005	중국 투자환경 이렇게 바뀐다!!!	2007.5
07-006	한미 FTA 활용, 산업별 대미진출전략 설명회	2007.6
07-007	이란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8
07-008	UAE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9
07-009	New China New Business 설명회	2007.9
07-010	벨라루스 투자환경설명회	2007.10
07-011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주요국 투자환경 세미나	2007.10
07-012	2008 중국 경제정책 대응전략 설명회	2007.10
07-013	인도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7.11
07-014	2007 일본 온라인 게임 시장 진출전략	2007.11
07-015	2007 국제자원협력 심포지엄	2007.11
07-016	미국시장 현지화 이렇게 한다 설명회	2007.11
07-017	2007년 해외에서의 지적권 보호 세미나	2007.11
07-018	글로벌M&A진출전략 설명회	2007.11
07-019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2007.12
07-020	2008 중국경제 핫이슈 전망 및 유망산업 진출전략 설명회	2007.12

● 산업연구

번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2007.11
07-0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2007.11
07-0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2007.11
07-0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2007.11
07-0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2007.11
07-0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2007.11
07-007	인도의 주요 산업	2007.11

작성자

- ◆ 통상전략팀 김성재 과장, 연승환 대리
- ◆ 뉴델리무역관 ◆ 도쿄무역관
- ◆ 멕시코시티무역관 ◆ 모스크바무역관
- ◆ 방콕무역관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 브뤼셀무역관 ◆ 상파울루무역관
- ◆ 상하이무역관 ◆ 시드니무역관
- ◆ 오克兰드무역관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 워싱턴무역관 ◆ 이스탄불무역관
- ◆ 자카르타무역관 ◆ 카라치무역관
- ◆ 카이로무역관 ◆ 팔라렘푸르무역관
- ◆ 타이베이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Global Business Report 07-048

2007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8년도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7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